

사천시지방별정직공무원의임용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검토보고

(의안번호 제6호 2000. 3. 8)

총무위원회
전문위원 성호영

1. 검토경과

- 가. 2000. 3. 8 사천시장 제출
- 나. 2000. 3. 8 총무위원회 회부
- 다. 2000. 3. 17 제43회 사천시의회 임시회 제1차 총무위원회 상정

2. 제안이유

선거에 의하여 취임하는 공무원과 진퇴를 같이 하는 것이 예상되는 비서관 또는 비서 등의 별정직공무원에 대해서는 근무상한 연령을 적용하지 아니하도록 하고 별정직공무원의 전보범위 및 임용권한위임 확대 등 별정직공무원의 인사제도를 합리적으로 개선 보완하려는 것임.

3. 주요골자

- 가. 별정직공무원에 대한 임용권자의 임용(신규임용, 전보, 휴직, 복직, 면직 및 징계)권한 중 소속기관의 장에게만 일부 권한위임되어 있는 것을 지방의회의 사무국장에게도 확대 적용함(안 제3조)
- 나. 단위기관내에서만 전보할 수 있는 별정직공무원의 전보범위를 단위기관 내 동직적 업무를 담당하는 직위로 전보할 수 있도록 그 범위를 확대함(안 제7조)
- 다. 별정직공무원 중 비서관 및 비서는 근무상한연령 적용을 받지 않도록 함.

4. 검토의견

- 이 조례안은 상당계급의 일반직공무원의 정년에 준하도록 되어 있는 지방

별정직공무원의 근무상한 연령을 선거에 의하여 취임하는 공무원과 진퇴

를 같이하는 것이 예상되는 비서 등의 별정직공무원에 한하여 상한연령제한을 받지 아니하도록 하고, 별정직공무원의 임용권을 의회사무국장에게도 임용권을 위임하는외 현실에 맞지 않은 일부조항을 현실에 맞도록 하려는 것으로 상위법에 저촉됨이 없고 시행에도 별다른 문제점이 없을 것으로 판단되므로 원안가결함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됨.